

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

[제정 2009. 5. 25]

[개정 2010. 2. 16]

[개정 2010. 5. 17]

[개정 2010. 10. 27]

[개정 2011. 10. 7]

[개정 2013. 11. 25]

[개정 2014. 5. 23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정관 제35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윤리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11.25)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윤리경영 및 반부패, 사회공헌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2.16, 2011.10.7)
2. (삭제 2014.5.23)
3. 윤리경영 및 반부패, 사회공헌 관련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2.16, 2011.10.7)
4. 윤리 및 청렴교육,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2.16, 2011.10.7)
5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한다.

1. 원장
2. 본부장 및 단장(개정 2010.2.16, 2010.5.17)
3. 민간위원(신설 2010.2.16)

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(신설 2010.10.27)

제4조의2(민간위원)(신설 2010.10.27)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·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단(Pool)을 구성하여 원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1.10.7)

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6조(위원) ①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한 안전에 대해 의견제시 및 심의·의결한다.

② 위원은 윤리경영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안전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업무관련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⑤ (삭제 2010.10.27)

⑥ 위원회는 대면심의·의결을 원칙으로 하고, 서면심의·의결은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한 경우에만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.(신설 2011.10.7)

제8조의2(제척·회피·기피)(신설 2010.10.27) ①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동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 등에 따라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서 스스로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민간위원은 당해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.(신설 2011.10.7)

제9조(부의절차) ① 위원회의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하되 감사관련 부서장이 상정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결정을 받은 경우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.

제10조(권한위임사항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위임장을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행위시 대리인의 포괄적 대리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의사록의 기록 및 보관)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열람 및 날인을 받은 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2.16, 2011.10.7)

③ 의사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,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시 사유를 명시한다.(신설 2011.10.7)

제11조의2(수당 등)(신설 2010.10.27) ① 본 지침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진흥원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회의 참석수당의 경우 진흥원의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규칙에서 정한 이사회참석수당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을 차감 지급한다.

- 제12조(윤리경영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)**(신설 2010.2.16, 개정 2011.10.7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과 반부패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위해 윤리경영실무위원회(이하 '실무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시책관련 “반부패실무추진단”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.
 -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, 직무분장 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조직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1차 간부가 된다.(개정 2013.11.25)
 -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.
 - ⑤ 추진단 및 실무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출석위원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보고 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10.27)

- 제13조(사회공헌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)**(신설 2011.10.7) ① 위원장은 사회공헌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위해 사회공헌실무위원회(이하 '실무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“사회적 책임”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.
 -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, 간사는 사회공헌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3.11.25)
 - ④ 실무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출석위원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보고 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⑤ 필요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별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.
 - ⑥ 사회공헌 실무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⑦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9. 5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2. 16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0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0. 7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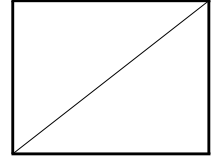
부 칙(2013. 11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5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

議 案 審 號	第 號
接 受 年 月 日	年 月 日

議
決
案
件

(案)

第 回 倫理經營委員會 案件

提 出 者	委 員 ○ ○ ○ (所屬 職責)
提出年月日	年 月 日

1. 議決主文

2. 提案理由

3. 主要骨子

4. 關聯根據

5. 其他事項

[별지 제2호 서식]

위 임 장

본인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의하여 다음의 대리인이 제○○회 윤리경영위원회에 대리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

대 리 인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년 월 일

위 임 자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 (인)

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귀하